

SE♥UL M! SOUL

지정 기탁금품 접수 심사 제도 안내

2024. 1.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과)

목 차

I. 지정 기탁금품 접수 심사 제도

1. 법적 근거	3
2.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4
3. 지정기탁금품 접수 심의 개요	4
4. 지정기탁금품 접수 체계	5
5. 참고 사항	6
6. 유권해석 및 심의 사례	7

II. 기타(서식 및 법령)

붙임 1. 지정기탁서	13
붙임 2. 기부심사 제안설명서	14
붙임 3. 장부가액 확인서	15
붙임 4. 기부금 영수증 양식	16
붙임 5. 기부증서	18
붙임 6. 지방자치단체 지정기탁금품 접수 관련 법령 조문	19
[관련법령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0
[관련법령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관련조례3.]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0

지정기탁금품 접수 기부심사 제도

기부금품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지정기탁 금품은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

1 법적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12조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기탁금품이라도 접수할 수 없으나,
 - 예외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접수할 수 있음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출연 법인 및 단체는 기부금품 접수 및 모집 가능

구 분	기 관 명	근거법령
서울시 기부심사 없이 기관별 자체 접수절차를 거쳐 지정기탁금품 접수 가능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서울도서관	도서관법
	서울의료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시립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기관별 자체 절차에 따라 모금 및 접수 가능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문화예술진흥법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행정목적은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은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2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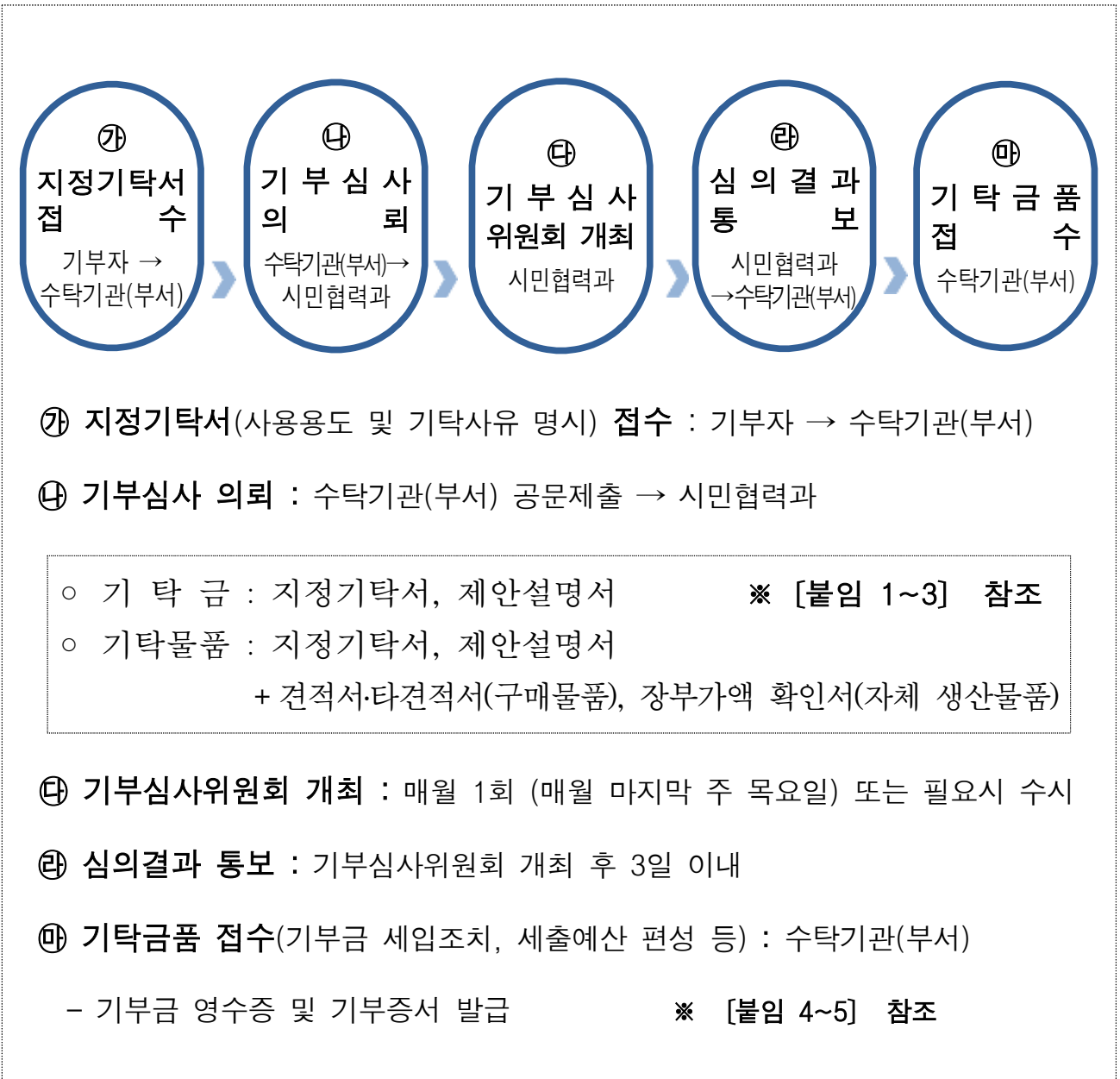
- 위원구성 : 13명
 - 당연직 : 2명 (위원장 : 시장,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임명직 : 2명 (내부공무원 : 행정국장, 복지정책실장)
 - 위촉직 : 9명 (민간위원 7, 시의원 2)
- 기 능 : 서울시 및 산하 기관의 지정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
- 운영방법 : 서면 및 출석 심의(월 1회, 필요시 수시)
- 개 의 :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의견제출)
- 의 결 : 출석(의견제출)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3 지정기탁금품 접수 심의 개요

- 심의일정 : 월 1회
- 심의대상 : 자발적 기탁금품
 - 현금 또는 물품으로 한정되며, 용역(인건비) 등은 해당 없음
 - ※ 부동산 등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한 기부채납 처리(재무국)
- 심의기준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에 수행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
 - ※ 장학재단 장학금 접수 시 반드시 적용(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기탁 배경, 기탁금품이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4 지정기탁금품 접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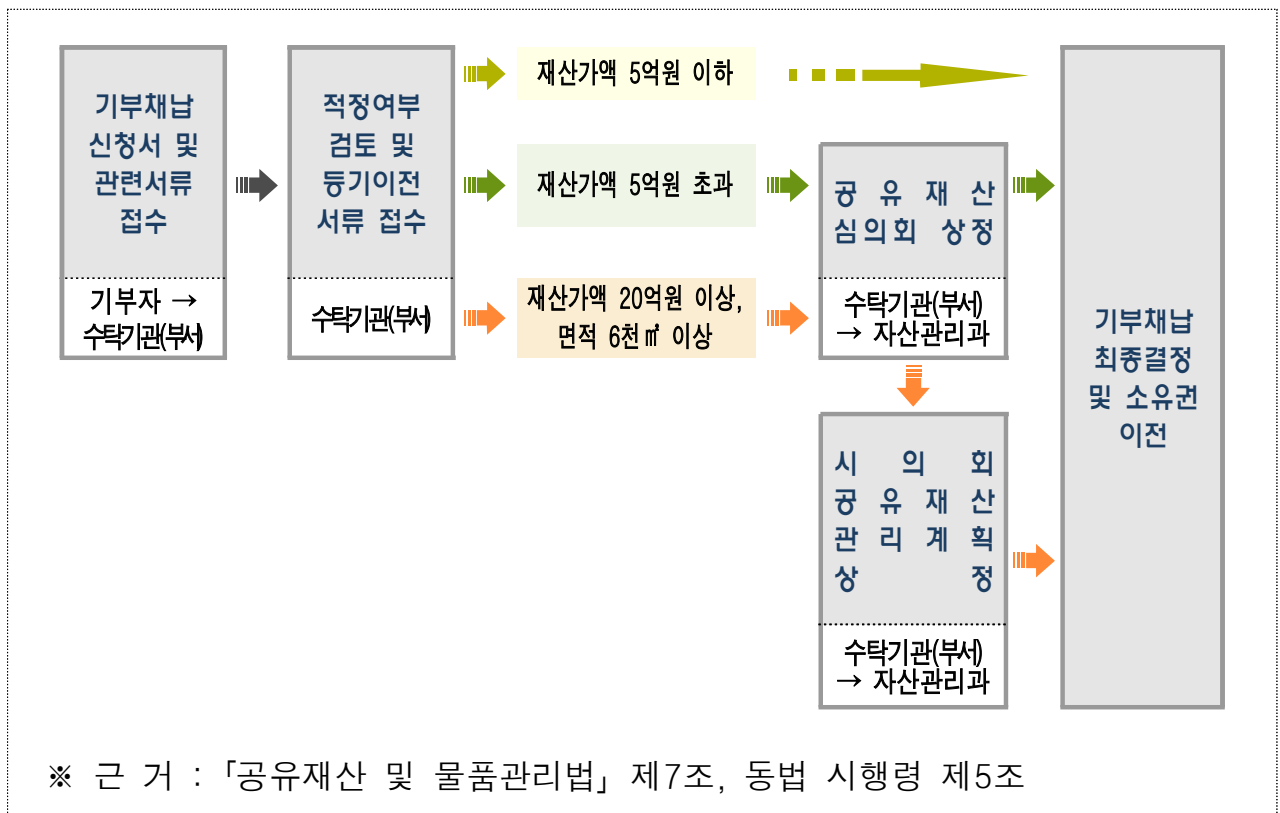
5 참고 사항

○ 기부금품 접수 처리

- 기부금품법에는 기부금품 접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부서 (수탁기관)에서 관련법에 따라 처리
 - ▶현 금 :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입과목 : 잡수익-기부금) 조치한 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 ▶물 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으로 등재하고 보관·사용

○ 공유재산 기부채납(부동산 등)

- 기부채납 :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
- 대 상 : 부동산, 유가증권, 지식재산(특허권, 저작권) 등



⑥ 유권해석 사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금품 모집 행위 제한]

① 질문	지자체 등(燈)축제를 추진하면서 민간기업에 기업협찬금을 제안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기업에 협찬금을 제안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경우, 민간단체의 본연에 사업이 아닌 지자체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므로 기업협찬금의 제안은 불가능 - 국가나 지자체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순수한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가능 - 협찬금이 기업광고 효과와 상응하는 경우, 반대급부에 해당되므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상응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탁으로 보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

② 질문	관련기업에 기부금액을 명시한 중소기업청 산하단체의 후원요청 안내가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②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품법」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란 기부금품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동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공무원 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 - 이는 국가기관의 암묵적인 기부강요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임 - 따라서 중소기업청 산하단체가 관련기업체에 기부금액을 명시하여 후원요청 안내문서를 발송한 행위는 기부금품의 모집행위에 해당하므로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지

[협약사항 이행]

③ 질문	재단법인과 업무협정을 체결한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출연한 경우,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③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함 - 재단법인과 ○○은행이 업무협정을 체결한 후 재단이 업무협정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반대급부인 금전을 ○○은행으로부터 출연 받았다면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타 법령 적용]

④ 질문	기업체나 개인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의료원의 공익목적 사업을 알게 되어 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한 경우 의료원은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사용 가능한지
④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접수할 수 없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기부금품법이 아니라 「지방의료원 설립법」에 따라 접수할 수 있음 ☞ 다만, 투명한 기부금품 접수·사용을 위해 「기부금품법」 및 시행령에 준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임

[특수이해관계]

⑤ 질문	○○기관이 계약관계에 있는 은행지점으로부터 행사 개최 경비 지원 용도의 기부금 접수가 기부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⑤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행사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할 사업이며, 자발적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함 <p>(※2019년 제9회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사례, 2019.9.6.)</p>

[행정목적 직접 필요성]

<p>⑥ 질문</p>	<p>농협 ○○시 본부에서 정부종합청사 공무원의 출퇴근용으로 자전거 50대(1천만원 상당)를 기탁하고자 하는 바, 동 건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p>
<p>⑥ 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원칙적으로 접수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행정목적 수행하거나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접수 가능 - 공무원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기탁하는 것은 기관의 행정목적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접수하는 것은 불가함 ☞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여부 결정은 당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
<p>⑦ 질문</p>	<p>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을 위해 건강 기능 보조 식품 기부가 가능한지</p>
<p>⑦ 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 의료기관인 수탁기관의 설립 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p>(※2020년 제4회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사례, 2020.4.6.)</p>
<p>⑧ 질문</p>	<p>화재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와 휴식에 도움이 되는 건강 음료 기부가 가능한지</p>
<p>⑧ 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를 예방,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수탁기관의 설립 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p>(※2023년 제7회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사례, 2023. 9. 25.)</p>

[기부심사 절차 적용 대상 기준]

⑨ 질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드림스타트센터가 이웃돕기 물품을 수령하여 어려운 대상에게 전달하는 것이 「기부금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⑨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 -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법인·단체를 말함 - 드림스타트센터가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법인·단체에 해당된다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 - 모집행위가 없었음에도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직접적인 행정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음

[후원 협조 행위]

⑩ 질문	각 대학에서 소속 경찰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부금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⑩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으로부터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추천받아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은, 모집자 등에 의해 기부금품이 모집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 아닌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기부금품법」 적용과는 무관함 - 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속경찰관 자녀 명단통보 등 단순 후원의 관여는 가능 - 다만, 장학금모금 요청공문 발송 등 기부금품 모집과 유사한 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기부금품법」 제5조에 저촉될 수 있음

[지자체 등의 기부 캠페인 가능 여부]

⑪ 질문	지자체 소속기관인 ○○도서관이 도서 기증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⑪ 답변	• 도서 기증 캠페인, 후원 유도 등 그 명칭이 어떠한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기부 의뢰·권유·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등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임

⑫ 질문	○○시가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서기증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⑫ 답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규제 대상이 아님

⑬ 질문	○○도서관이 민간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다른 국·공립도서관 기증하는 것이 기부금품법 위반인지 여부
⑬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동 사례와 같이 해당 도서관의 자료 확충 목적이 아닌 제3자에 기증할 목적으로 서울도서관에게 기탁하는 경우까지 「도서관법」에 따라 접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⑭ 질문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도서기증 캠페인 추진 시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
⑭ 답변	•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국가 등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 금품 모집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음

[관-관 기부금품 접수]

<p>⑮ 질문</p>	<p>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접수할 수 있는지 여부</p>
<p>⑮ 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기부금품법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국가 등은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등이 자발적으로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발적으로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에도 기부금품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 입니다.

<p>⑯ 질문</p>	<p>경찰관의 체력증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운동기구)의 접수가능 여부 및 접수처리 절차</p>
<p>⑯ 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품법」 제5조의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에 대한 규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암묵적 기부강요로 인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권 침해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임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가기관(문화체육관광부)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등의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소지가 없는 관(官) 대 관(官)의 관계는 「기부금품법」 상의 규제대상이 아님 - 동 내용의 접수처리 절차는 「기부금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회계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

기부심사 제안설명서

※ 기술 내용 중 심사 정보가 부족한 경우 보완 시까지 안전 상정이 보류될 수 있음

1. 제안 사유(200자 내외)

- ※ 기부 경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
- ※ 기탁자에 대한 설명 등 상세 기술

2. 기탁금품 내역

연번	기탁자	기탁금품		용도
		현금	(환산액)	
		물품		

3. 사전검토 항목

연번	검토(확인) 항목	검토(확인) 결과
1	기탁자가 개인(단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인가	완료 <input type="checkbox"/> (기타:)
2	기탁금품이 수탁기관의 행정목적 또는 설립목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완료 <input type="checkbox"/> (기타:)
3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가?(인허가, 공사용역 계약 또는 입찰, 보조금 관계 등)	완료 <input type="checkbox"/> (기타:)
4	기탁금품의 접수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가	완료 <input type="checkbox"/> (기타:)
5	기탁자가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를 원하거나 동의하는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검토 의견(300자 내외)

- ※ 사전검토 항목에 따른 검토 내용을 상세히 기술
- ※ 필요 시 검토 근거 자료 등 참고 자료 첨부

5. 관련 규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기관명

장부가액 확인서

(단위: 원)

순번	제품(상품)	수량	장부가액	기부환산액 (수량*장부가액)	비고(판매가액)

본사(본인)의 장부가액 세부내역은 외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 사항에 대한 사실 책임 여부는 본사(본인)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기부처(기부자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붙임 4] 기부금영수증 양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23. 3. 20.>

일련번호	
------	--

기 부 금 영 수 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②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지 점 명*)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등)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근거법령
(지점 소재지)	

* 기부금 단체의 지점(분사무소)이 기부받은 경우, 지점명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④ 기부내용

코 드	구 분 (금전 또는 현물)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 ②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은 해당 단체를 기부금 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공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코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국가·지방자치단체), 나목(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10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102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산학협력단 등 각 목에 열거된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3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각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4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105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116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2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0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0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40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40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연구비·장학금)	40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40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0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노동조합 등의 회비)	42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공익단체)	42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	461

-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④ 기부내용의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4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42
필요경비(순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50

- ④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현물기부"시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구분	기부자		기부받는 공익법인
	법인	개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Max(장부가액, 시가)	Max(장부가액, 시가)	시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		장부가액*

*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

- (유의사항)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말함)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중복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부증서

○ ○ ○

귀하께서 사랑과 나눔으로 기탁하신 기부금품(000
500점, 5천만원 상당)은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시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 ○

[붙임 6]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기탁금품의 접수 관련 법령

구 분	관 련 조 문
<p>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p>	<p>[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p> <p>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p>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p>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p> <p>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p> <p>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p> <p>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약칭: 기부금품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90호, 2021. 10. 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044-205-3181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2016. 2. 3., 2021. 10. 19.>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

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④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

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8.>

③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등) ①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모집자의 사무소나 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①등록청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1.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같은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한 경우

3. 모집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4. 모집자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나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경우

6.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7.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8. 모집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9. 모집자나 모집종사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을 갖추어두지 아니한 경우

10. 모집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청은 모집금품을 처분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 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인

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청문) 등록청은 제10조에 따라 모집자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공개 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조(권한의 위임)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再委任)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6. 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 6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0. 6. 8.>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이 부과·징수한다.
- ③ 삭제 <2009. 4. 1.>
 - ④ 삭제 <2009. 4. 1.>
 - ⑤ 삭제 <2009. 4. 1.>

부칙 <제18490호, 2021. 10. 19.>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부금품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044-205-3181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 등록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7.>

1. 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제1호 외의 경우: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제3조(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7.>

② 제1항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20. 7. 7.>

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계획서
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3. 모집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4. 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 신고증 등 해당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의 경우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추천서
6.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회사 등의 예금통장 사본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모집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경력과 신용정도
2. 모집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자산·신용정도와 대표자의 경력·신용정도
3. 모집된 금품으로 하려는 사업의 수행능력 유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7.>

⑤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1. 3.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7.>

[제목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4조(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이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20. 7. 7.>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1. 3.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조(등록사항 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20. 7. 7.>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청”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위원은 각 부·처의 차관·차장, 국회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차관인 부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3. 29.>

②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20. 7. 7.>

-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 ⑥ 시·도 및 시·군·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의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의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의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의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조(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31.>

1.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 가. 국방부 본부
 - 나. 합동참모 본부
 - 다. 한미연합사령부
 - 라.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 마. 각 군 본부 및 각 군의 장성급 지휘부대 및 기관
2. 시·도경찰청 이상 경찰관서
3. 지방해양경찰청 이상 해양경찰관서
4. 삭제 <2016. 11. 29.>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6조(검사 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0. 1.]

제17조(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①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서를 등록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②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기부금

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등록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모집비용 총당비율 적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의 비율을 말한다.

제19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① 모집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부를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7. 7.>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법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모집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7. 7.>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4.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④ 기부자는 제3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장부(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된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부는 해당 기부자의 기부내용으로 한정한다)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자는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0. 7. 7.>

⑤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에 기부금을 접수한 금융회사 등의 예금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7. 7.>

⑥ 모집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부자 등이 모집 상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매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 7. 7.>

제20조(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기관”이라 한다)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②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7. 7.>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모집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1조(모집등록 등의 공고) 등록청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증을 내주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에는 관보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등록청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하는 자는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7.]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0. 1.]

제23조 삭제 <2018. 12. 24.>

부칙 <제31349호, 2020. 12. 31.>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85호, 2021. 12.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사회협력과), 02-2133-656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8>

제1조의2(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2조(적용범위) 본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기부금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1.12.30>

제3조(정의) 예우라 함은 기부자에 대해 시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건물 및 공간명칭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개정 2015.10.8, 2019.12.31, 2021.12.30>

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시
5.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제5조의2(기부문화 활성화)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2. 기부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1.12.30]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와 제5조제6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0.8, 2021.12.30>

② 위원회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 상징물 설치의 장소 및 규모, 종류, 기간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12.30>

③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 ③ 위원은 공무원 4명 이내, 시의원 2명 이내 ,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12.30>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7.1.5>

[제목개정 2021.12.30]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여부와 명예의 전당 등 기탁자에 대한 예우 여부 및 범위·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12.31>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30>

부칙 <제828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